



자. 힘드셨죠? 이번엔 그동안 봤던 내용을 잠깐 점검해볼까요?

첫 번째.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할 경우 어떤 방식의 입원절차가 있을까요? (자발적인 대답을 기다립니다)
네. 우선 정신장애인은 자의입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호자동의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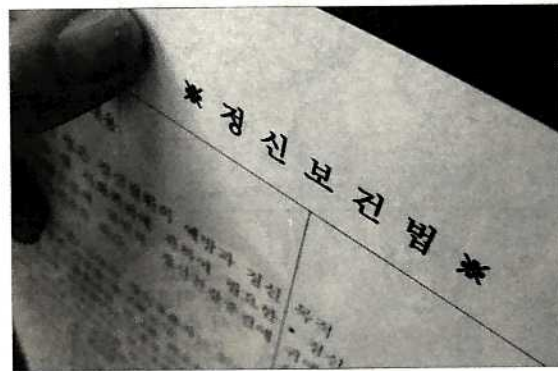
두 번째. 방금 이야기한 4가지 중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때 가장 먼저 권유되어야 할 입원방법은?
답: 당연히 '자의입원'이겠죠. 자의입원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병을 알고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의입원을 하면 증상이 호전된 후 본인의 의견으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자의 입원률이 8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10%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의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겠죠.

세 번째. 보호자가 입원시켰을 경우 최대한 입원하게 되는 기간은?
답: 6개월 이내죠. 단,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계속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사회복귀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답: 사회복귀시설입니다.

다섯 번째.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교육은?
답: 인권교육입니다. 최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답: 인신보호법입니다. 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박수~ 쳐볼까요?~ 짹짹



다님2

TIP

- 약간의 상품을 걸고 진행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하지만 무리하게 경쟁심을 유발해서는 안 되겠죠?
- 일상생활, 병동생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결부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여 관련된 정신보건법 내용을 찾고 그에 대한 대응방식과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퀴즈를 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씨가 한 번도 주치의로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듣지 못한 채 5년 동안 입원한 상태이며, 가족들 또한 면회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는가? → A씨의 대처 방법 제사(정신보건법 00조, 인신보호법 00조에 위반, 벌칙조항))
- 참고사례와 퀴즈사례를 숙지하고 진행해주세요.
- 사례를 제시하고 법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관련지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몇 조인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진행하시는데 참고하도록 몇 조인지 제시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제시한 내용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례에 대해 찾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예전에 입원했을때 입원기간이 6개월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난다. 입원기간이 법과 관련되어있는지 몰랐어요. 법에 서있는 걸 보니 신기해요'
'이런 법에 대한 내용을 가족에게도 교육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의 내용이 너무 어렵네요'
'단어들을 잘 모르겠어요'



〈참 조〉

정신보건법과 관련된 세부조항 중 회원과 관련된 법 조항사례

▶ 퇴원심사청구 사례(정신보건법 제29조)

1. 내담자는 2006. 5. 23. 경 00병원에서 퇴원을 위한 퇴원심사청구서를 주지 않아 00시청에 전화를 걸어 00시 공무원이 직접 신경정신과 3층 수간호사에게 청구서를 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수간호사는 원무과 0 대리하고 상의해서 주겠다고 하고서는 약 한 달간 주지 않았음.

2. 내담자는 병원 측이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내담자는 병원 측이 계속 입원심사청구를 하면서 환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승인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다고 함. 내담자가 퇴원심사청구를 하자 00은 다른 환자들에게 절대 이러한 퇴원심사청구나 이의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함.

▶ 행동제한금지 사례(정신보건법 제 45조)

내담자는 2006. 6. 14. 10:00경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000보호사가 공중전화 카드를 뽑아 전화를 하지 못함. 10분후 000보호사가 다시 와서 내담자에게 “수간호사가 시켜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내담자는 6월 21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수간호사가 내담자를 통화금지자 명단에 올려 아예 전화통화를 할 수 없게 되었음.

▶ 환자의 격리제한 사례(정신보건법 제 46조)

내담자는 00의원에 알코올 중독으로 서너 차례 입원한 적이 있었고, 현재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음. 00의원은 외부와 환자들을 격리시켜 환자들을 고립시키고, 기저귀를 채운 채 환자들을 묶어놓기도 함. 내담자는 자세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편으로 진정하겠다고 함.

▶ 가혹행위 및 독방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례(정신보건법 제 6장 벌칙 제 55조 6항의 2)

내담자는 7~8개월 전 갑자기 쓰러져 00병원 신경회과에서 뇌수술을 받았는데, 00병원의사가 수술 실패도 뽑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보호자인 딸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인 △△병원으로 보냈음. 이에 내담자는 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상태로 △△병원에 15일간 입원되어 있었음.

내담자는 예전에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복용하던 약이 있었음. 그런데 △△병원에서 다른 약을 처방하여 원래 복용하던 약을 주거나 약의 용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복용을 거부하였음. 그러자 보호사들이 내담자를 묶어 놓았음. 또한 보호사들은 환자들에게 욕을 하는 등 위압적으로 행동함. 입원기간 중 다른 환자와 말다툼을 했다고 내담자를 독방으로 데려가 아침 8시경부터 밤1시경까지 15시간 동안이나 팔다리를 묶어놓음. △△병원에 입원된 지 15일 후 내담자는 다시 00의 □□병원으로 옮겨져 7개월 간 입원되었음. 이 역시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딸에게만 얘기했음.

〈참 조〉

인권 “정신보건법·인신보호법” 퀴즈

- A씨는 한 번도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받아야할 이유도 듣지 못한 채 5년간 입원한 상태이며, 가족들 또한 면회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 정신보건법 23조, 24조
∴ 6개월마다 계속입원 심사청구 → 심판위원회 ⇒ 판정
☆ 의사도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B씨는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거주지가 없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요양원에 입소시켰다.
→ 정신보건법 43조
→ 인신보호법 9조, 11조 (구제받을 수 있다.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다.)
- C씨는 밤에 병동에서 다른 환자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사가 임의로 1시간동안 격리실에서 강박을 시켰다. (의사의 지시 없이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다)
→ 정신보건법 46조
☆ 보호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D씨는 감기기운이 있어 작업치료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현하였으나, 이를 무시당한 채 6시간동안 봉투작업에 동원되었다.
→ 정신보건법 41조3항, 46조
☆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씨는 주1회,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사용 허가된 전화를 하기위해 기다리던 중 기다리는 줄이 길어 사용시간이 종료되었고,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였다.
→ 정신보건법 45조
☆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 F씨는 퇴원 후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약물복용을 중지하였다. 이후 F씨는 폭력적이고 비위생적인 행동 등 병이 재발된 상황이다. 그러나 보호자는 이를 방치한 채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화를 피하며 F씨의 상태를 외면하고 있다.
→ 정신보건법 22조
→ 외래치료명령제 37조 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맺음새 (5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정신보건법 전문을 읽어보고, 정신질환자 입원의 4가지 유형 및 입원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이해합니다.
2.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입원치료 기간 중 침해당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치료받고 보호받을 환자로서의 권리옹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토의해 봅니다.

12. 인권지킴이가 되어요.



목 표

1.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봅니다.
2.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어요.

준 비 물

전지 모둠수 만큼, 색연필, 크레파스, 영상CD, 빔프로젝트, 노트북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님1.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터뷰 영상 보기(15분)

☑ **진행자 멘트** : 그동안 인권교육 받느라 고생 많으시죠? 이번 시간도 힘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영상을 하나 볼까 해요. 정신장애인 분들을 인터뷰한 영상이랍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소감을 나누어봅니다) 네. 잘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존중의 즐거움' 인식개선동영상 "존중하지 않는 것" 3:35~10:22 / 2008.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제작)

☑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지난 시기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생각났다'
- '가족들이 강제입원을 시키면 마음에 상처가 되요'
- '병원에 때리고 독방에 가두고 퇴원도 안 시켜줬어요'
- '저는 집에서 잘 지냈는데요. 막내 동생이 저를 보고 "정신병자야", "미친것야" 이런 얘기를 해서 속상했어요'
- '여러 사람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다님 2. 인권지킴이가 되어요. (35분) [부록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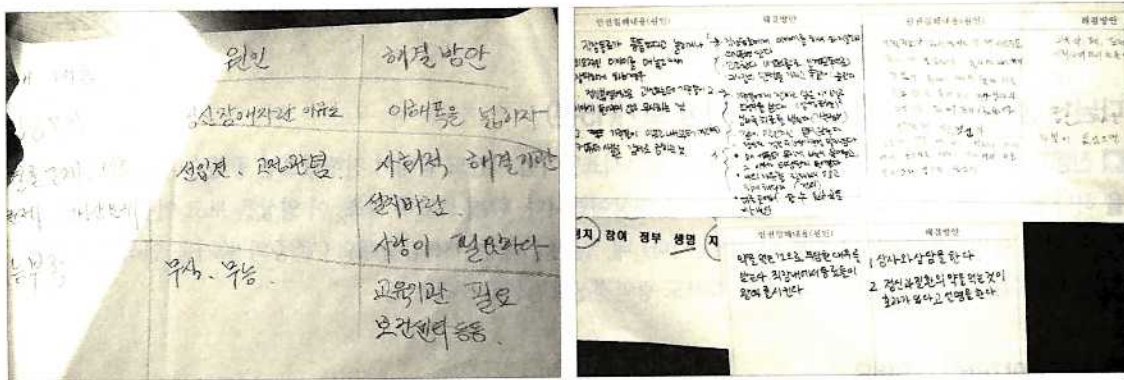
- (1) 모둠을 구성하여 모둠내에서 인권침해경험을 모아봅니다.
- (2) 인권침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둠안에서 함께 고민해봅니다.
- (3) 모둠별로 전지에 '인권침해내용-(원인)-해결방안'으로 정리해서 써보도록 해요.
- (4) 인권침해 사례 중 역할극을 짜보도록 합니다.(만약 침해사례가 없을 경우 제시된 진행TIP에서 회원들과 상의하



여 하나를 정해 역할극을 진행합니다.)

- (5) 역할극을 보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다른 방안 등을 얘기 해봐요.
- (6) 진행이 잘 된다면, 다른 모둠의 참가자들이 직접 역할을 바꿔 진행해보기도 합니다.
- (7) 참가자들 간에 소감을 나눠요.
- (8) 자신이 경험한 인권침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명확히 짚어주도록 합니다. 또한 각 참가자들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해주도록 합니다.

▶ **진행자 멘트** : 이번에는 우리 모두 '인권지킴이가 되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해볼까합니다. 각 모둠별로 인권침해의 경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정신장애인이라고 무시당했다', '식당에서 편견의 말을 들었다' 등의 얘기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둠별로 침해내용을 적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서 적어 봅시다. 함께 예를 들어볼까요? 도서관에서 정신장애인이거나 무시당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도서관에 문제제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해결방안을 생각해서 적어 볼게요. (진행자는 돌아다니며 참가자들이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고, 참가자들에게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겠다.)



이제 이번에 여러 사례들 중 하나를 골라서 역할극을 해볼까합니다. 인권침해 상황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해결까지 역할극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번 역할극을 짜볼까요?



▶ **진행자 멘트** : 이번 시간에는 역할극을 통해서 우리가 불편을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앞으로 우리는 인권을 무시당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응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TIP **다님2**

- 침해 상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인권침해의 적절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역할극의 예시를 두어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 상황카드를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TIP **인권침해사례 제시**

정신병원 관련 인권위 보도자료 2007년 8월 2일

“강제입원 퇴원불허 격리·강박 폭행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

- 국가인권위 올 상반기 권고사례 통해 본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설립 이후 정신보건시설과 지도감독기관에게 재발 방지 등의 권고를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여전히 이미 권고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올 들어 권고 결정을 한 10여 건의 진정사건에 나타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 현실은 아직 상당수의 정신보건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검찰 고발**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은 상당수 입원환자들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켜 왔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전·현직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요지〉 진정한은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에게 부당한 입원, 격리, 강박, 전화제한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입원환자들이 구금시설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인권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진정일자 2006. 10. 결정일자 2007. 7.)

- 그동안 위 병원은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들을(올케, 외삼촌, 시설장 및 시설직원,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 등) 보호의무자로 하여 환자들을 입원시켰고, 입원동시서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된 환자들에게 입원사유,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준 사실도 없었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매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입원 및 토원을 반복한(별첨 1표 참조)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별첨 2표 참조)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켰고(별첨 3표 참조),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제22조)를 침해하는 것이고(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퇴원한 적이 없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의사지시서, progress Note, 간호기록지 등)에 퇴원과 입원을 반복한 것처럼 기록한 것은(의료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중전화를 설치하지 않아 간호사실에 있는 전화를 사용토록 하면서 통화횟수는 2주에 1회로 제한했고, 통화시간도 3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작성한 편지는 간호사실에서 열람한 후 발송여부를 결정했고 진정권 보장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고 건의함과 진정함을 병행하여 사용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격리 및 강박의 경우도 병동규칙으로 사유 및 시간 등을 정해 놓고 임의대로 시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환자들이 병원의 화장실, 복도, 홀 등을 청소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킨 위 병원의 전, 현직 병원장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의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울러 감독기관의 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병원장에게도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2 부당한 격리, 강박, 통신의 자유 제한

- <진정요지> 서울 소재 모정신병원은 환자들을 그룹체계로 나누어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환자가 입원하면 양손과 양발, 가슴을 묶는 등 부당하게 강박을 한다(병합사건 진정일자 2005.10. 2005.11 2006.6 결정일자 2007.2)
- <진정요지> 대전 소재 모정신병원은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진정을 방해했으며, 부당한 격리와 강박은 물론 강제입원 및 강제퇴원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진정을 원한다(병합사건 진정일자 2005.10. 2006.7. 2006.8. 결정일자 2007.3.)
- <진정요지>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함은 물론 전화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기능을 정지시켜놓고, 외부인의 환자 면회 시 보호사를 입회시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진정일자 2005.12 결정일자 2007.4.)
-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은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 강박 관련,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되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면서 특히 강박시에는 시행 당시 환자상태, 사유, 방법, 지시자 및 수행자, 시행 시간, 시행 중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통신의 자유 제한 등 입원 환자에 대한 행동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되 그 이유,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 등에 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역 소재 병원에서는 통상 개별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격리·강박에 관한 지시 없이 입원 초기 내리진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 또는 병원규칙에 따라 사실상 간호사, 보호사가 격리, 강박을 시행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또한,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상태에 대한 판단 없이 입원 환자들을 권익체계에 따라 그룹화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 병원규칙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행동 제한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입원 환자의 전화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입원 환자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과도한 CCTV 설치

- <진정요지>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샤워시설로 함께 사용되는 병원 화장실에 문과 칸막이가 없어 용변을 보는 모습과 목욕 장면이 바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를 CCTV를 통해 관찰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진정을 원한다(진정일자 2005.12 결정일자 2007.4)
- 위 병원의 경우, 화장실과 샤워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폐막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그 안에 CCTV까지 설치하여 환자들의 신체부위가 다른 환자나 병원 종사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국가인권위 실시조사 이후 화장실 및 샤워실에 차폐막을 설치하고 CCTV를 철거하였지만, 화장실 차폐막 설치하는 환자들의 상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미흡했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이러한 행위는 입원 환자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수치심과 굴욕감을 유발하고 환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화장실의 차폐시설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05. 3. 14.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환자 폭행

- <진정요지>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질환이 심한 환자에게 욕설과 구타를 한다(진정일자 2005.12 결정일자 2007.4.)
- <진정요지>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은 뇌가 손상되어 의사표현을 못하는 환자에게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넣어 괴롭혔다. 또 약을 똑바로 먹지 않는다고 보호자가 환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팽 소리가 나게 부딪혔다.
-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과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 종사하는 일부 보호사들이 방어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폭행했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들이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 머리를 때리거나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의 경우 징계 절차 중에 피진정인이 사직했고,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서는 피진정인들에 대해서 시달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을 참작하여 피진정병원장에게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여 시행토록 권고했습니다.

5 진단서 무단발급에 의한 인권침해

- <진정요지> 서울 소재 모정신병원은 정신질환치료 경력이 기록된 진정인의 진단서를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무단으로 발급 해주었다(진정일자 2006.7. 결정일자 2007.2.)
-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기록열람 등)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



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진정인의 법령상 상당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발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7조와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위 정신병원에 대하여 진정인의 진단서를 권한 없는 자에게 발급해 준 정신과전문의를 주의조치 할 것과 위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권고하였습니다.

6 부당 입원 및 서면고지 의무 위반

<진정요지> 진정인은 포항 소재 모정신병원에 강제 입원(2005.11.)되었는데, 피진정인인 병원장은 입원사실을 환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진정일자 2006.6. 결정일자 2007.4.)

<진정요지> 진정인은 형제들에 의해 인천 소재 모정신병원에 강제입원(2005.5.)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퇴원을 불허하고 있다. 퇴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진정일자 2006.8. 결정일자 2007.5.)

-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법 조문은 자료의 첨부 참조)는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정신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입원 당사자에게 입원 사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소재 모정신병원, 충남 소재 모정신병원, 인천소재 모정신병원,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치를 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퇴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정인들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비자발적 입원환자에게 입원 사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채 보호자 동의 및 전문의 진단에 의해 입원된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하고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 포항 소재 모병원장을 비롯한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비자발적 입원환자들이 자신의 입원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그 사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원심사청구를 통해 부당한 입원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 입원 환자가 퇴원심사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즉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보건법상의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원환자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입원 환자들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피진정병원장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7 병원 치료환경 훼손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충북 소재 모병원은 병원 안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안내하면서 조용한 환경에서 치료 받아야 할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조성하고 있다(진정일자 2006.8. 결정일자 2007.2.)

- 헌법 제17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환경조성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정신병원장은 병원 구내와 이에 인접한 곳에 대형 조각상 수십 점을 설치하여, 이를 관광객에게 관람시키면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냄으로써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저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정신병원에 대하여 병원 구내에 조각상 관광객을 입장시키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8 부당한 종교의 자유제한

<진정요지> 충북 소재 모정신병원의 타 종교에 동의 없이 환자들을 강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시키고 있다(진정일자 2006.8. 결정일자 2007.2.)

-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종교 및 종교행사에 참여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병동 찬양행사와 찬양대회를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병동내의 강제적인 찬양행사와 찬양대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9 지도 감독 관련(공통)

- 위와 같이 피진정 병원들에서는 정신보건법령 등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들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위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 해당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침해 경험 :

'도서관에서 정신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치과에서 간단히 충치 때우는 치료를 정신과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했다. 노모가 함께 가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해 이가 훼손되었다'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컴퓨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

'병원에 입원 중에 간호사가 보고 있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서 거부했더니 강박했던 적이 있다'

'강제로 봉투작업을 하게하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일을 하게 했다'

'다른 사람은 40만원을 주면서, 나에게는 30만원을 주었다'

'성당에서 반주를 하려고 했는데, 정신분열증환자가 무슨 반주냐며 창피를 줬다'



맺음새 (5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지역사회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기관) 안에서 나의 가족이나 동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인권 옹호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실천합니다.



>> 수어가는 페이지(실무자의 이야기)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분위기.. 딱히 말을 하기도 그렇고 주장하기도 그렇고 시스템 안에서 그걸 주장하기 취약한 부분들, 권위적인 부분에 묵인하고 있지 않나요?”

“회원들이 침해와 차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지 못하실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인권교육이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해요”

“가족교육 시간에 교재개발에 대한 이야길 했더니 가족 대부분이 아이들이 뭘 알겠냐고.. 하세요. 증상들이 나타날 때마다의 가족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이런 가족들을 보면서 당사자들은 더 체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신장애인이 성인 초기에 발병해서 오랫동안 병을 앓다보니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가족에게 의존해서 살면서 자기의 인권이라든지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중국엔 항상 가족의 의견에 따라, 다시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게 되죠.”

“보건소에서 운동처방 같은걸 이용할 수 있는데 센터 회원이니까 이용하면 안 된다고 했었고 한번은 전화가 와서 ‘혹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센터 회원이냐? 아닌데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확인해봤다’는 거예요. 단지 뭔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정신장애인 일거라고.. 답답하고 화가 나죠.”

“네가 뭘 알아. 네 주제에. 가만히 있어라’ 가족들의 무시와 소외에서 당사자가 체념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은 꼭 필요해요”



13. 대중매체와 인권



목 표

- 1.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여요.
- 2. 영화, 뉴스, 드라마, 개그프로그램 등 대중매체의 영상 등을 본 후 차별과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준 비 물

동영상, 노트북, 빔프로젝트, 필기도구, A4 용지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님1. 영상 상영 [부록1참조]

1)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다님2. 영상에 대한 느낌과 소감 이야기나누기

1) 영상 속에서 보여 지는 차별과 침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봅니다.

TIP 다님1

- 영화 한 편을 다 보는 것은 회원들의 집중력이 짧은 부분과 시간상 제약이 있어 필요한 영상을 편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며, 영화의 한 장면, 뉴스, 드라마, 개그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표현한 영상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는 진행자가 필요할 경우에 유동적으로 진행여부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을 미리 매뉴얼 해 놓을 경우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장점 : 진행자가 쉽게 진행할 수 있고, 공통의 자료로 모든 기관이 진행할 수 있음. 단점 : 시기성의 문제.) 매뉴얼 자체에서 제시해주는 자료를 이용하던, 이를 참고로 진행자들이 새로운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자·료

1. 영화 “블랙” 2009.08.27 개봉작
사하이 선생님이 알츠하이머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로 병원직원들이 침대 모서리에 쇠사슬로 사하이 선생님을 묶어놓은 것은 인권침해..
2. 2009년 12월 8일 MBC 라디오 “여성시대” 방송 중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일기장을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그것을 방송사연에 내보낸 것. 아이의 실명까지 거론되었음. 아이의 사생활을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인에게 공개한 것도 인권 침해가 아닐까.
3. “연예인이 날 괴롭혀왔다” 조종망상증 스토키 충격(긴급출동SOS)“ 2008.06.04 뉴스엔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806040814361001
4. “묻지마 정신질환자 입·퇴원, ‘인면수심’ 정신병원” 2009.11.16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05512>
5. “86% 비자의 입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은 53%” 2009.11.10 welfarenews
http://www.welfarenews.net/news/news_view.html?bcode=21004
6. “[변양균—신정아 의혹 확산] 신씨 누드사진 보도 파문... 인권침해 논란” 2007.09.14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661844&cp=nv>



7. "정신장애인 직업 차별, 법률에서도 심각" 2009.10.05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2220091005100500323125>
8. "인권위 '불법감금' 정신병원장 고발" 2009.09.21 YTN
http://www.ytn.co.kr/_ln/0103_200909211141587910
9. "대외비' 통신자료 요청서 꽃집 팩스에 보내...정신 나간 수사·사정기관" 2007.08.29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70829001285&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dataid=200708291713000211>
10. 부록1. 인권관련 영화 및 영상 참조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어주세요

예) 보험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되어 있으나, 상법 제 732조에서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이란 용어는 법률행위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용어지만, 정신장애와 신체장애와 동일시되어 사실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막는 법률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아무런 의학적 근거나 체계적 규정 없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맺음새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뉴스나 드라마에서 정신질환을 폄하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나 내용을 유심히 살펴 보면서 폄하되고 인권침해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2. TV, 라디오, 인터넷, 영화 등에서 정신질환 폄하 및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동아리, 단체 등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14. 국가인권위원회 1



목 표

- 1) 인권침해 시 대처방법을 알 수 있어요.
-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알 수 있어요.

준 비 물

국가인권위원회 설명 자료 및 PPT자료, 진정서 사람 수만큼, 펜 사람 수만큼, 노트북, 빔프로젝트, 4가지 정도의 색지 (사람 수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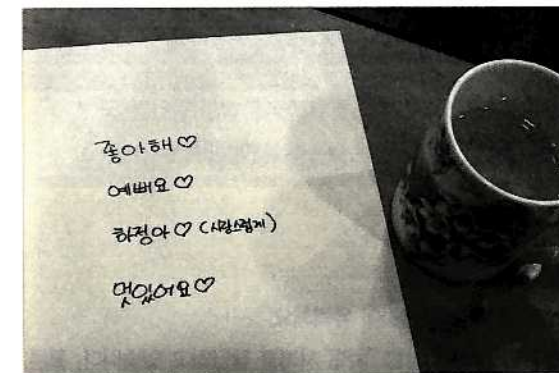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남1. 종이비행기 날리기(20분)

- (1)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색지에 잘 적어본다. 색지는 몇 가지 색을 가지고 나눠주도록 합니다.
- (2) 자신이 적은 종이를 잘 접어서 종이비행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함께 날립니다.
- (3) 자신이 적은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을 접어서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잘 읽어줍니다.



진행자 멘트 : 새로운 한주가 왔습니다. 첫 프로그램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종이에 잘 적어, 그 말을 잘 담아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몇 가지 색지 중에 맘에 드는 색지를 골라서, 자신이 요즘 듣고 싶은 말을 적어봅니다. 자신이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겠다, 아니면 나는 요즘 이런 말을 듣고 싶다 등의 말을 크게 잘 적어봅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종이비행기 모양으로 잘 접어주세요. 종이비행기 모양을 잘 못 접겠다 하시는 분은 옆에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접어 봐요. 다 접으셨나요? 자 그럼 한번 날려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날리는 겁니다. 자신이 접은 종이비행기 색을 잘 기억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자신이 적은 색이 아닌 다른 색의 종이비행기를 가져와주세요. 돌아가면서, 종이비행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볼까요? (한분 한분 할 때마다 호응해주며, 박수를 쳐보는 건 어떨지요?) 자 모두 다 읽어보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네. 서로 이런 말들을 해주다면 계속 힘이 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넌 참 손발이 예쁘구나.',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요즘 예뻐보이네요', '살이 빠졌구나',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서', '담배를 끊었다니 대단하네요'. '좋아해', '취업이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이 없어졌습니다', '**과에서 공부하세요', '정말 색시하세요. 나랑 사귄래요?', '숨씨가 대단하군', '그래도 잘했어요'

다님2.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인가요?(15분)

- (1) 국가인권위원회(http://humanrights.go.kr) 홍보 자료 및 PPT자료에 대해 설명해봅니다.
- (2) 인권침해, 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진정의 범주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행자멘트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질문) 네. 맞아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기구이죠. 우리 자료를 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까요?(PPT내용을 소개해주세요.) 어렵게 느껴지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다님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봐요(25분)

- (1) 진정서 양식을 함께 봅니다. 용어, 서식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진행자 멘트 : 이번엔 진정서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정이란, 자신 혹은 지인이 경험한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나 공/사를 넘어선 차별영역에 대해 신고하는 행동을 말해요. 진정서를 작성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관이 나와 해당 사항을 조사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권고' 수준이기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국가기관과 기업에서 많은 부분 수용을 하고 있어요.

TIP 다님3

진행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업무 및 진정서 내용에 대해 숙지해야 해요.

- 진정서 하나에 하나의 사례만 진정할 수 있어요.
- 정신보건시설에는 진정함 비치가 필수예요.
-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해줘요.
- 법에 위반되거나 침해된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유력해요.
- 국가인권위 진정 범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가기관/기업/사인에 의한 '차별' 사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도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 민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중복 진정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의 내용을 진행자 또는 사례관리자가 내용의 강도를 미리 검토해서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서 서식에 대한 세밀한 교육이 필요해요

- ppt로 만든 진정서를 작성해 놓은 예시(10회기에서 나왔음 직한 사례를 이용하여 연장선상에서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인권침해사례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기관에서는 원 메뉴얼대로 진행하되, 그게 어려운 기관에서는 각 개인마다 쓰는 것이 어렵다면 각 모둠에서 하나씩 작성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일정한 사례를 가지고) 연습해보는 과정도 좋아요.
- 작성방법과 용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설을 위한 예시(말보다 시각적 효과)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 진정서를 교육 시간에만 써보는 경험에 머물지 말고 1~2개 주제를 정해 공동으로 진정서를 쓰고 모두가 진정인이 되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어요.
- 설사 내용이 진행자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더라도 진정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지,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행자가 맞춤법을 수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찾아가 보는 방법도 좋겠죠.

진행자멘트 : 이번 시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기관이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비치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맺음새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권관련 공청회 또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합니다.



‘함께 고민해봐요’

정신장애인에게 치료를 거부할 권리(입원을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 **상황** : 정신장애인이 증상으로 인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전제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강요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원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 고민이 되요.

▶ **대안만들기** : 이 문제는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핵심일 것 같아요. 현재 시군,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강제입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 2인의 동의만 있으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입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보호자에 의한 입원 중 보호자의 편의에 의해 입원하고 있는 사례가 없도록 정신과 의사 등 병원관계자들이 좀 더 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입원 시 개입할 수 있는 창구를 확장시켜내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해외의 게이트키퍼(입원을 결정하는 사람)의 사례처럼, 다양한 정신보건전문가가 입원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입원시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입원의 종류와 퇴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이 부당하게 입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정신장애인이 가장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얼마나 복용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해요. 단지 한 번 설명해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증상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고지도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퇴원에 대한 개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현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심사방식(6개월에 한번, 대규모 서면심사)이 개선되어야지요. 심사기간을 대폭 줄이고, 서면심사를 대면심사로 바꾸어야 하겠지요. 이를 위해 사회적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지원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15. 국가인권위원회 2



목 표

-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과정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2) 진정서를 작성해봅니다.

준 비 물

국가인권위원회 설명 자료 및 진정자료, 진정서와 펜(사람 수만큼), 노트북, 빔프로젝트, 지지단어 판

진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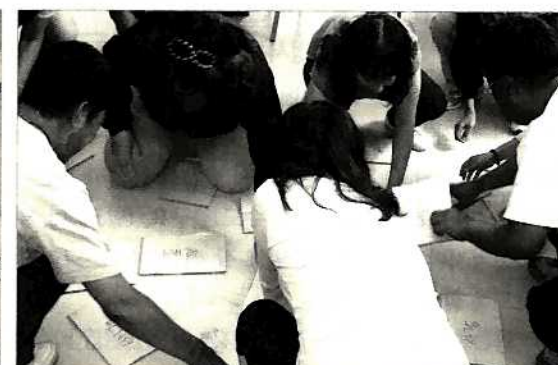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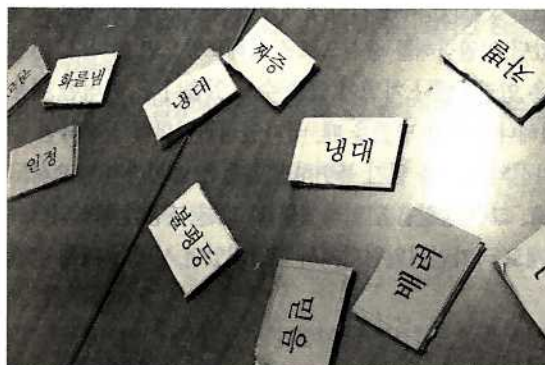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짐1. “지지단어 판”을 뒤집어요.”(10분)

- (1) 이전 회기에 진행되었던 ‘인권을 존중해주는 지지단어’를 가지고 ‘지지단어’ 판을 미리 만들어둡니다.
- (2) ‘지지단어’ 판은 자유롭게 뒤집기 쉬운 두꺼운 종이로 앞장과 뒷장을 색상을 달리하여 만들어둡니다. 한쪽은 인권을 지지해주는 단어로, 다른 한쪽은 인권을 침해하는 단어로 제작합니다. 지지단어판은 중복이 되더라도 상관없으며 개수는 20개 이상으로 만듭니다.

▶ **진행자멘트** : 오늘 시작할 프로그램은 ‘지지단어판을 뒤집어요.’ 라는 게임을 할까 해요. ‘인권을 존중해주는 지지단어’를 썼던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어떤 단어들 나왔었죠? 네, 맞아요. 평등·지지·행복 등등 많은 단어를 써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이 단어들을 이용해 양면에 색상과 내용이 다른 지지단어판을 만들어보았어요. 단어판 한쪽은 인권을 존중해주는 단어이고, 다른 한쪽은 인권을 침해하는 단어예요. 팀을 나누어서 한번 해볼까요?





지지/침해 단어 예시

▶ 지지 단어

기대, 울타리, 평등, 차별 없는 세상, 존경, 사랑, 도움, 믿음, 소망, 권리, 법, 이해, 존중, 행복, 평화, 경청, 자유, 생명, 존엄성, 친구, 가치, 발언권, 동등함, 자존심, 인정, 즐거움, 보장

▶ 침해 단어

무시, 차별, 색안경, 편견, 제약, 폭력, 강박, 따돌림, 구속, 왕따, 불친절, 구타, 감금, 욕, 폭행, 비난, 가난, 잔소리, 소외, 차가움, 냉대, 고립, 암울, 배척, 무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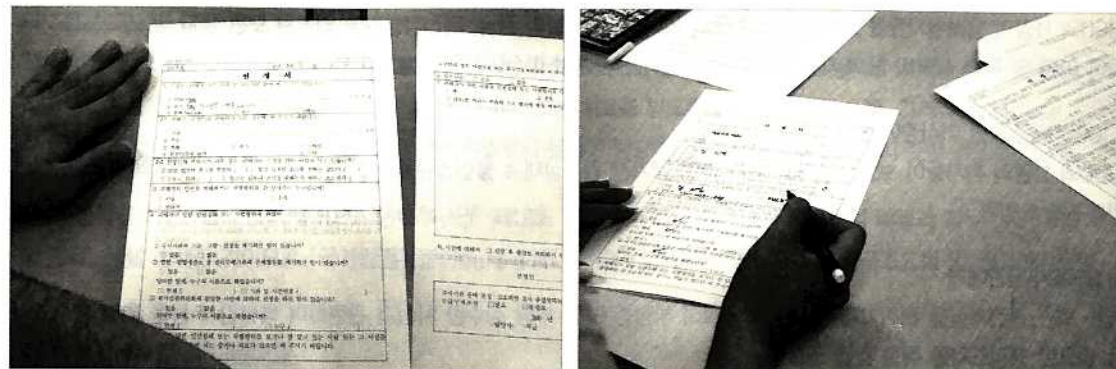
▶ 잘못 생각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 인내, 타협, 해택, 배려 등은 가치 있는 단어이지만 정신장애인이 권리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지지 단어로는 어울리지 않아요.
- 화, 장애, 늙음, 억울함, 반대 등은 침해 단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울리지 않아요.

다님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해봐요(40분)

- (1) 진정서 작성 양식을 함께 봅니다. 이전 회기 내용을 살펴봅니다.
- (2) 진정서를 나누어주고 작성해봅니다.
- (3) 작성한 진정서 모의 제출 및 작성한 진정서를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만 골라 함께 읽어봅니다.
- (4) 작성한 진정서에 대해 잘 지지해줍니다.
- (5) 인권상담사례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해결 되었던 사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 **진행자멘트** : 지난주에 봤던 진정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진정서를 작성해볼까 하는데요. 진정이란,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신고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진정서를 작성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관이 나와 해당 상황을 조사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권고' 수준이기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국가기관 혹은 기업에서 많은 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모의로 진정서를 작성해볼까요? 자신이 받았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작성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전에 병원에서 받았던 인권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겪은 인권침해나 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번 잘 작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좋겠지요. (작성완료) 자,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볼까 하는데, 자신의 내용을 읽기 불편하신 분들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구요. (발표)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셨군요. 그건 분명히 해결되어야 하고 고쳐져야 할 문제네요. 발표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결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TIP 인권위 진정 후 해결과정 사례

정신병원 환경개선요구

제목 : 불법적인 작업치료 및 환자 감시 등의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 상담요지

1. 내담자는 알코올중독 환자로 00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음.
2. 해당병원에서 한 달 소모품비로 5만원을 내게 하고 그 내역 중 환자복과 침구류 세탁비가 4만 2천원이라고 함. 병원에서 환자복과 침구류 세탁비를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3. 환자들은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포백 접기를 함. 이렇게 하면 얼마간의 작업비가 있는데 그 돈으로 환자들은 담배를 사서 피우거나 간식비로 사용함. 한달에 2~3만원 하는 그 돈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지급을 미루고 있음.
4.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지체환자의 경우 타 환자가 돌봄, 대소변을 치우는 것은 물론 그 빨래까지 시키고 있음. 즉, 담배를 제한시키면서 환자를 돌볼 때 제한된 담배를 주겠다고 그걸 미끼로 환자를 이용하는 것임.
5. 환자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상태를 매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CCTV까지 갖춰놓고 환자들한테 이러한 일들을 시키고 있음. 이 밖에도 여러 이상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한 번에 다 들춰내기가 힘들.

▶ 답변요지

1.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작업을 강요당하거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진정 후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안내함.
2. 위원회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안내하고 접수증명원을 송부함.

위 상담관련 진정의 인권위 결정(인용)

제목 :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7.10.8

주문

1. 검찰총장에게.

강00외 97명의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 누락,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 대해 2주에 1회로 전화통화 제한,



김00외 11명의 행려환자들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 감금,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모든 환자 및 가족들을 기망하여 이불 및 환의 세탁비 등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과 관련해서 피진정인을 고발함.

2. 0000구조공단 이사장에게

김00외 11명의 환자들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감금상태로 불법입원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 요청함.

3. 0000부장관에게

입·퇴원 관련사실을 허위기재한 사실과 의료비 부당청구 및 부당 징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특별감사 등을 통해 환수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4. 00도지사에게.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위반 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에 동의하여 관리감독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00시장과 00시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판단내용과 이유

- 요약 -

1) 작업치료 문제

피진정병원의 환자에 대한 작업치료의 경우 정규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에까지 환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하루 8시간 이상 과도한 시간의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치료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작업이 아니라 해당병원의 운영 편의·인건비 절감 등-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작업비 지급방식도 개인통장 입금을 해야 하는데 정신장애인 특성상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실시조사 이후 통장을 개설한 것은 피진정병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냄. 현재 「정신보건법」에는 환자 작업치료의 절차와 기준, 내용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다만 강제력을 갖지 않는 「작업치료지침」이 있을 뿐임. 따라서 작업치료 명목의 강제노역이나 노동력 착취사례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법 규정 명문화 이전에 피진정병원의 즉각적 시정조치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부당한 격리 및 강박문제

임의대로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고 있음. 「정신보건법」제 46조 및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됨.

3) 소도품비 및 식비문제

병원 입원비에 이불 및 환자복교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원환자에게 해당 비용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의무 없는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준 것으로서 「헌법」제 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형법」제 347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4) 환자 감시 등

방장제도를 운영하여 환자들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됨. 보건복지부에서도 매년 해당 제도를 폐지도록 안내하고 있는바 즉각적인 폐지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지도·감독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 39조 제1항에 의해 00시 및 00보건소는 치정정병원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해당 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감독의무가 있음. 그러나 00보건소는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이외의 위반사항을 전혀 적발하지 못하여 담당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마.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 10조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47조에 의거 고발, 법률구조요청 및 권고하기로함.

▶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차별사례들

'집세가 밀려서 어려웠을 때 당시 월세를 못내는 만큼 보증금을 깎고 있었다. 집주인이 찾아와 소리 지르고 당장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샷대질을 받았어요.'

'시댁에서 나를 싫어하고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라고 했어요.'

'일을 못한다고 욕을 먹고, 얼굴을 맞은 적이 있다'

'영농사업단에서 일을 하는데 정신장애인의 자활사업에 있어 편견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근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다며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해서 모두 철수했다'

'요양원에서 떠든다고 뺨을 맞았어요.'

- 소감들

'우리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 침해사례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까 설명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진정서를 직접 써보니까 이해가 되요'

'개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준다니, 세월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 **진행자멘트** : 이번 시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이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비치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맺음새 (5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진정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정요구, 부적절한 치료환경의 개선요구를 위한 진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6. 인권모임을 만들어요



목 표

1) 인권모임에 대해 알아보고, 인권모임을 만들어봅니다.

준 비 물

포스트 잇, 필기구

진행방법

들어가기. 지난 시간 이야기나누기 및 오늘 프로그램 소개 (5분)

(1) 지난 시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해보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진행자멘트** : 저번 시간에는 우리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어떤 법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참여자 이야기)

다님1. '모의 100분토론' 진행해보기(20분)

- (1) 자조모임(인권모임)에 대한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모아봅니다.
- (2) 자조모임(인권모임)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봅니다.
- (3) 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함께 이야기해본다.

■ **진행자멘트** : 이번엔 모의 '100분토론' 을 해보려고 해요. 인권을 혼자만 알고 있기 보단 여러 사람이 알고 실천할 때 더 큰 힘이 되겠죠? 주제는 "인권모임 필요한가? /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주제로 가상 토론을 해 볼까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예를 들면 인권모임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권은 밥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많은 의견들이 오고간 가운데 인권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롭고 자치적인 모임을 일컬어 "자조모임" 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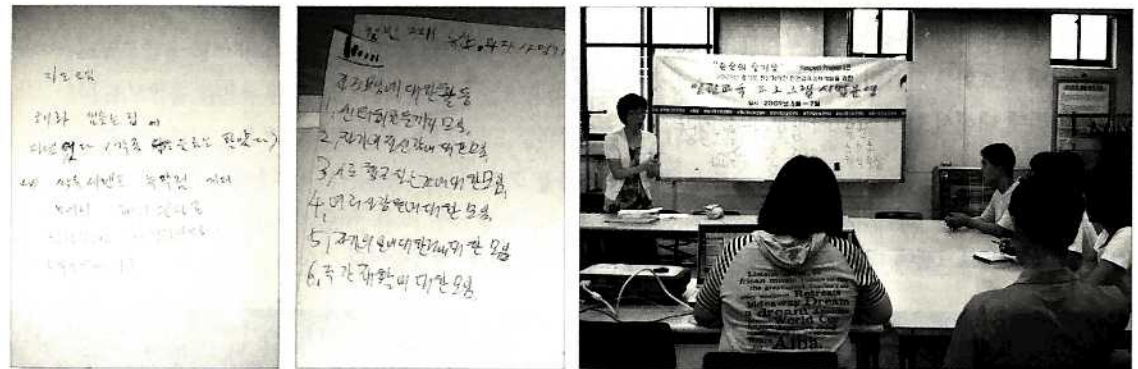
다님2. 인권모임을 만들어봐요.(20분)

- (1) 인권모임(자조모임)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2) 인권모임(자조모임)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포스트잇에 써본다.

(3) 작성한 내용을 모아 함께 이야기해본다. (비슷한 내용을 묶어 본다.)

(4) 인권모임을 원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일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진행자멘트** : 자. 이번엔 '인권모임' 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참. 인권모임과 자조모임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인권모임은 인권을 고민하는 모임이라는 뜻일 텐데. 자조모임의 뜻은 뭘까요? 네. 맞아요. '스스로 돕는 모임' 이죠. 바로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서로를 도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기관의 운영자, 종사자가 아닌, 보호자가 아닌, 바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문제를 함께 고민해나가고, 해결해나가는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 지체장애인들은 전국에 모임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인권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전국적인 모임만이 있는 건 아니죠. 작게는 기관의 작은 문제들, 불편한 점들을 바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모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자조모임' 을 만들어 본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써볼까요? 포스트잇을 나눠 드릴 테니, 각자 고민을 한번 써보세요. 하나 이상 한번 써 볼게요. 자 다 쓰셨으면 벽에 붙여보고 얘기해보지요. (비슷한 내용은 묶어서 얘기해주세요) 와. 정말 많은 얘기들을 써주셨네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자조모임' 을 만들어보면 정말 좋겠습니 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으로 '인권모임' 을 만든다면, 함께 해 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지금 고민이 없더라도, 모임을 진행하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기관에서 언제든지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질 계획이오니, 자조모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함께 활동했던 영상(사진)을 함께 보며 그간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진행) 여러분들 어떠세요? (소감을 나누어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참가해주시고,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인권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인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주 동안 너무 힘드셨을텐데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조모임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박수치면서 마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님2

TIP

- 기존의 기관에 자조모임 혹은 참가자들의 모임이 있다면, 참가자들의 모임을 활용하여 인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자조모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참가자들이 있다면, 자조모임에 대한 팁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모임일정(주기) : ex) 월 1~2회 / 주 1회
 - 시 간 : ex) 1시간
 - 모임명칭 : ex) 수원센터 시나브로
 - 구성원 조직 : 원하는 성원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동아리 형태 / 센터 이용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자치모임 형태
 - 운영주체 : 회원 중 주도자(회장) 1~2인 주도 형태 / 회원 + 실무자 공동 주도 형태
 - 회원들의 활동내용/주제 구조화 예시
 - 학습(정보제공, 스터디, 신문스크랩, 법에 대한 공부 등),
 - 생활나눔(일상생활 속의 침해, 존중의 경험 나누기, 인터넷 카페 운영 등),
 - 활동(등산, 인권영화관람, 매체 속의 인권침해사례 찾기, 공청회 참여 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억울한 일들을 자조모임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 ‘서로 얘기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면 좋겠어요’
- ‘인권에 관련된 동영상 및 기사를 수집하고 시청해보면 좋겠어요’
- ‘캠페인하고 싶어요. 정신장애인의 편견을 해결할 수 있도록’
- ‘센터내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 ‘인터넷 동호회를 만들어 함께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 ‘일자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봐도 좋겠어요’

맺음새

(1)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 서로 나누어보고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 교육 후 참가자들을 위한 과제

1. 정신장애인 인권옹호 자조모임을 결성하고, 자조모임의 활동내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봅시다.
2. 정신장애인 인권 자조모임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가족인권 자조모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 수어가는 페이지(당사자의 이야기)

「인권교육을 평가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저희가 인권교육을 했을 때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났을 때, 선생님이 평가를 했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과 진행자가 평가를 같이해서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서는 평가를 이렇게 하더라는 식으로 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대목이나 말을 적어보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인권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고요”

“설문지 같은 경우는 복잡한 부분도 있었고요, 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모델개발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참여한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니는 기관엔 금연모임이 있어서, 조별모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 모임이 없었다면 제가 그 분들을 잘 몰랐을 거예요. 같이 조모임을 하면서 친해지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도 좋지만 이렇게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좋고, 밖에 나가서 실습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들하고 처음에는 서먹하기도 하겠지만, 좀 더 자주자주 모여, 좀 더 많이 알게되면 서로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하네요”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요. 인권교육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장애인 통계를 보니까, 다른 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이 취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 점이 마음이 아팠는데,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 계시는 사원들이나 사장님도 인권교육이 전해져서, 정신장애인이 문제가 안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권교육을 활성화시켜서 병원에 있는 관리자들이, 환자들에게 작지만 성의 있는 말을 해주고, 환자뿐만
고통 받지 말고, 사회로 나가서 세상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길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듯이, 병원에서도 인권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인권교육을 접하면 좋겠어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
리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던 경우도 좀 더 많이 제시가 되면 좋겠어요”

“역할극을 함으로써 제 자신도 비춰볼 수 있었어요. 저도 편견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기관에 들어와서 다
른 분들과 친해지면서, 다른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오히려 이분한테는 이런 배울
점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저희 회원들은 기가 많이 죽어있어요. 환자들이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자조모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호응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
기에도 스스로가 자조모임을 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할지도 잘 모
르겠어요. 하지만 자조모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권교육 후 진행자들의 인식의 변화들...



1. 실무자들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돼요!

“이 교육을 통해서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식의 전환이 왔어요. 내가 인권교육 프로그램 진행자라는 것 자체만으로 나를 인권적으로 만들더라고요. 회원
들의 시선으로 볼 때 제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옹호해 줄 것 같이 보이셨는
지 많이 와서 물어보시고, 내가 마치 인권변호사가 된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굉장히 인권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2. 회원들의 자기결정권을 고민해보아요!

“실무자는 보통 회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면담을 하잖아요. 하지만 인권교육을 하면서 회원의 자기 결정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다보니까 면담의 초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결정권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만든 규칙이나 조직의 목적이나 결정에 맞추어 본인이 결정한 것을 바꾸어야
할 때 많이 고민이 되요”

“인권교육 중에 회원 한 명이 직업재활에서 탈락이 됐어요. 본인이 탈락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전
같았으면 “오늘 한 번 나가서 좀만 더 해보세요.”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걸 유지했을 때와 유지하지 않았을 때 이런
영향들이 있으니 스스로 선택을 내리하고 했더니, 본인이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시더라고요. 제 스스로 뿌듯했어요.
제 스스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거 같아요.”

3. 우리 함께 해결해 보아요!

“많이 혼란스러워요~ 일을 할 때.. 예전과 비교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여기(인권TFT) 와
서부터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직접 실천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들”

“앞으로 계속 생각이 바뀌고 궁금증은 늘어나는데.. 해답을 찾는 과정이 어려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재
를 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재에 우리의 경험을 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들었고 우리가 이 인권교육의 목적에 제대로 다가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자기질문도 수없이 반
복하게 되요”



“실무자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을 통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들.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딱 나타나는 게 이 사람을 격리수용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하다, 라는 느낌으로 흘러가는 느낌들..”

“인권교육 내내 계속되는 질문들과 싸워야 해요. 새로운 사례가 나타나고, 새로운 질문이 나타나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던 질문들에 적절히 대답했는가?.. 이런 생각들이 나를 성장하게 하더라고요.”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나만 느끼고 있던 게 아니구나! 다른 실무자들도 느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었던 거 같아요. 확실히 처음엔 막연했지만, 지금은 뭔가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서 좋아요”

4.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요!

“당연히 차별과 침해를 받으셨을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자유롭게 꺼내지 못하시더라고요.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차별이라고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어요.”

“정신장애인이니까 당연히 편견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에 회원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강요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나의 또 다른 편견을 주입시키는 기분, ‘당신은 인지를 못하지만 분명 차별을 받았을 거야. 생각을 해내봐~’ 마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회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육이 좋긴 한데 정말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까요? 인권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된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자기 경제권이 중요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이랑 관련이 된 거지만 이분들은 딱 꺾히진 않는 거지요.”

“회원 분들이 눈에 확 보이게 달라진, 보이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나 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모습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로받았다고 얘기하시는 회원분도 있었는데, 위로도 받고 아~ 내가 소중하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쌓인다면 인권이라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소중하니까 그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병이 나서 그래요. 나는 환자라서 그래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말들이 아니라,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 목표는 그 소중함을 느껴서 내가 받았던 경험들,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자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진행을 했어요. 우리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꼈던 게 내가 남에게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나부터 나를 존중해야겠다는 피드백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표현 안 하시던 분도 조금씩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 회원 분들을 서서히 변화시킨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 프로그램 우리 회원들에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도움이 되었었던 거 같고, 또 우리 회원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내 자신의 소중함을 느껴서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내가 살아오면 내가 경험했던 인권 침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들이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또 하나는 회원이 진행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김호님이 같이 와서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그룹 하나는 김호님이 진행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김호님 그룹에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인권위원회와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회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몰랐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지식전달도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지식전달을 그 분들과 연관된 부분부터 얘기해 나간다면 훨씬 그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아까 울타리 이야기했을 때 법이나 사회가 우리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그분들에게는 사회구성원이다 라는 참여에 관한 부분들.. 나도 사회구성원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에 급급했었는데 교육에 참여하다보니 나한테 이런 권한이 있구나.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5. 인권교육 할 때는요!

“항상 이 인권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반복해서 조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권교육은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알아들었다하더라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모른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또 알게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식적인 부분을 가르치기보다 본인들끼리 뭉치는 과정은 본인들 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충분히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배려한다는 느낌.. 그건 이 사람들을 정말 배려가 아니라, 어느 하나의 역할을 주어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한 건데, 장애라는 것은 배려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배려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로딩이 더 생긴다고 생각해서 취업이 안되는 게 사실이죠.”



부록1 프로그램 시트 모음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2. 난 소중한요/다남3]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내 몸이 차가우면
친구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듯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친구의 마음을 받아 줄 수 없듯이,

내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친구를 방 안에 들어오라고 할 수 없듯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친구도 소중히 여기기가 어려워요.

모두가 날 따돌린다고 느꼈을 때
여전히 "안녕?" 하며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친구가 있었기에


나도
다른 친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로부터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친구에게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아요.

마음 아파하는 친구를 그저 보고만 있으면
그 친구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아프게 되지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친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3. 인권! 누구냐 넌?/다남1]


 내 인생에서 소중한 다섯가지를 적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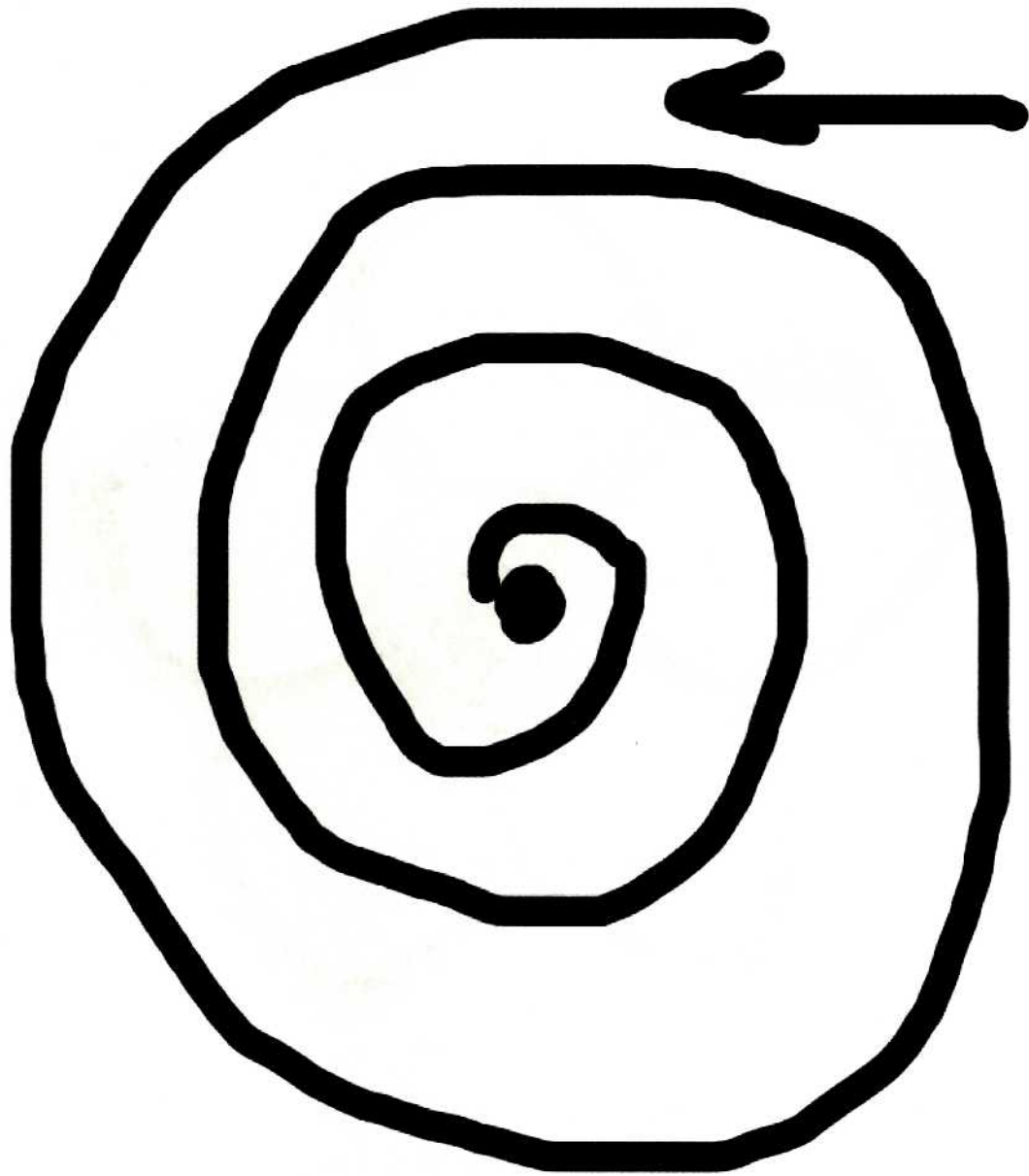
자신이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사랑, 우정 등), 사람(어머니, 아버지, 가족 등), 물건(컴퓨터, 핸드폰 등) 등을 잘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적어봅니다.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3. 인권! 누구나 넌?/다님2]

 길따라 삼천리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4. 인권애 친구하자 / 다님1]

 인권이란 무엇이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PICTURE

인권이란 _____ 이다.

왜냐면 _____

_____ 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5. 차이와 차별 이해하기 / 다남1]

차씨 집안에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차씨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이'라는 이름이고,
둘째는 '별'이라는
이름의 아가였습니다.

둘은 생김새가 비슷한 만큼
모든 것이 닮았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것도
옹알옹알 종알거리는 것도
모두 닮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은
차이와 차별이가
어렸을 때는 둘을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두 아이는 닮은 듯도 하면서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던 어느날

차별이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친구에게
너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못생기고
집이 가난한 친구들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자신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장애인 친구가
다리가 불편한 것과

자신이 다리가(를)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그저 서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만의
소중한 점과
그 친구만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차별이는
자신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도리어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었지만

차이는 키가 작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친구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주기에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이와 차별은
서로 닮은 쌍둥이 같지만
너무나 다른 개념입니다.

나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래서 타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혹시 나는
내 주위의 친구와는 차이를
차별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돌려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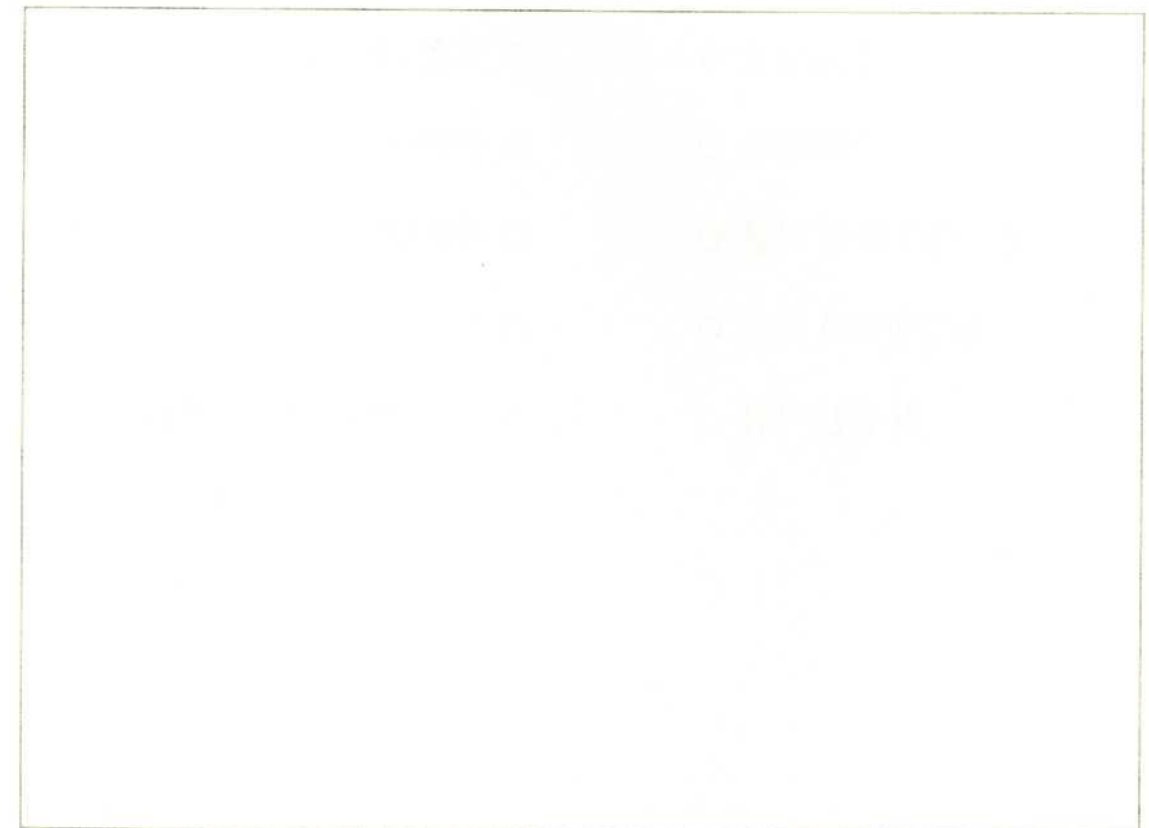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5. 차이와 차별 이해하기 / 다남2]

윈스턴과 알라오 고쳐쓰기

[윈스턴과 알라오]


윈스턴씨는 영국 사람.
그에게는 알라오라는 친구가 있어.
알라오는 아프리카 사람.

윈스턴씨는 의사이고,
그의 친구 알라오는 농부라네.
윈스턴씨는 알라오가 아플 때마다 항상 치료해주지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6.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 다님1]

 제시되어있는 '사람'에 어울리는 '형용사'를 찾아 연결해봅니다.

- | | |
|------------------|---------------|
| 퐁퐁한 사람 ○ | ○ 살이 찌지 않는다. |
| 머리카락이 굵고 짙은 사람 ○ | ○ 게으르다 |
|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 ○ | ○ 불량하다 |
| 정치가들 ○ | ○ 자유분방하다 |
| 가난한 사람 ○ | ○ 권위적이다 |
| 신세대들 ○ | ○ 나쁜 사람이다 |
| 여배우들 ○ | ○ 둔하다 |
| 목소리가 작은 사람 ○ | ○ 아름답다 |
| 신경질적인 사람 ○ | ○ 심술궂다 |
| 문신한 사람 ○ | ○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다 |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7. 존중받으면 달라져요 / 다님2]

 나의 경험담 나누기

누군가에게 존중받아 본적이 있었나요?	
누군가를 존중해 본적이 있었나요?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7. 존중받으면 달라져요 / 다님3]

존중받으면

_____가(이) 달라져요.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8. 우리몸과 인권 / 9. 인권지도 그리기]

세계인권선언

제 1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 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 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 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제 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대!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제 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제 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제 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제 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 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 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 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제 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제 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제 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20조: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 21조: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제 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제 23조: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 25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6조: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 27조: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 29조: 우리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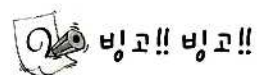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 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 세계인권선언 원문과 국제앰네스티, 유니세프의 축약본을 참조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이 쉬운말로 고쳐 쓴 것입니다]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11. 법과 친해지기 / 다님1 빙고게임]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12. 인권지킴이가 되어요 / 다님2]

인권침해내용	
원인 “나는 왜 인권침해를 받았을까? 나는 왜 인권침해라 생각할까?”	
해결방안 “어떻게 대처할까요?”	

프로그램 시트 [참가자시트-13. 대중매체와 인권 / 다님1](가로용지)

생각해봅시다	제목 또는 주제(내용)	
침해 또는 차별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또는 어떻게 바꿀까요?		



부록2 참고서적, 사이트 및 영화소개

I.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별별이야기' 학습지도안
- 국가인권위원회: '다섯개의 시선' 학습지도안
- 국가인권위원회: '여섯개의 시선' 학습지도안
- 유동철(2008):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 양서원
- 윤희운(2009): "세상을 껴안은 영화읽기" 문학동네
- 베델의집사람들, 송태욱역(2008): "베델의 집 사람들" 궁리
- 이관주(2003): "말해요, 찬드라" 삶이보이는창
- 로렌슬레이터, 조중열역(2005):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예코의 서재
-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2008): 2008년 정신보건지도자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황해미(2009): 2009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 '영화와인권' 교재

II. 장애관련 영화 리스트

▶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Never Ending Peace And Love)

감독: 박찬욱 / 상영시간(28분)

내용: 1999년 어느 날, 서울의 한 섬유공장에서 보조미싱사로 일하던 네팔 노동자 찬드라 꼬마리 구름은 친구와 말다툼을 한 이후 밖으로 무작정 나온다. 공장 근처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 먹은 후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된 찬드라는 돈을 내지 못하고, 식당 주인은 그녀를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찬드라를 행려병자로 취급해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킨다. 자신이 네팔 사람이라는 찬드라의 말을 믿은 한 의사의 도움으로, 찬드라는 6년 4개월의 시간 후에야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고, 네팔로 돌아갔다.

※ 출처: 여섯 개의 시선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제작)

▶ 동물농장(Animal Farm)

감독: 권오성 / 상영시간(15분)

내용: 염소는 양들이 사는 농장을 땀땀하며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장 양을 비롯하여 다른 양들은 자신과 다르게 생긴 염소를 내친다. 어느 때와 같이 양들의 주변을 돌아다니다 염소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다. 양털을 모아 뜨개질을 하여 옷을 만들고 뿔을 잘라내어 양들 사이에 끼어들지만, 가짜임이 밝혀지고 쫓겨난다. 슬픔으로 자살을 하려던 염소, 그런데 농장에 소, 오리, 닭, 돼지 등의 동물을 태운 트럭이 도착한다. 이제야 염소도 농장의 한 식구가 될 수 있었다.

※ 출처: 별별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제작)

▶ 낮잠(Day Dream)

감독: 유진희 / 상영시간(13분)

내용: 아빠와 낮잠을 자던 바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꿈을 꾸다. 수영장에서 같은 또래 아이들과 엄마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하고, 버스정류장에서는 휠체어를 탄 바로를 그냥 지나쳐버린다. '어서 와' 하며 반겨주는 유치원으로 가려 했지만 높은 계단이라는 현실의 장벽에 멈춰서버리고 만다. 아빠는 집을 팔아 바로의 의족을 사준다. 의족을 신고 산책을 하던 바로는 자신과 비슷한 장애를 가진 강아지를 보고 집으로 데려와 함께 낮잠을 잔다.

※ 출처: 별별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제작)

▶ 언니가 이해하셔야 돼요 (Seaside Flower)

감독: 박경희 / 상영시간(22분)

내용: 다운중후군 소녀인 은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다니는 통합학교에 다니지만 친구가 없다. 상상 속의 친구 이지영, 백지영, 김하늘 외에 은혜의 유일한 친구는 함바집 아줌마로, 은혜는 아줌마를 늘 그리워하며 아줌마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한다. '똥보메기', '아줌마' 라는 놀림에 어눌한 말이지만 은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분노하기도 하는데, 엄마와 엄마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에 호응이 없자 은혜는 상상 속의 친구들과 혼잣말을 하다가 엄마의 친구에게 "어떤 애가 있는데, 나쁜 애가 아니며 언니가 이해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영화는 끝난다.

※ 출처: 다섯 개의 시선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제작)

▶ 빠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감독: 밀로스 포만(미국 감독) 1977년 / 상영시간(129분)

내용: 감옥보다 정신병원이 편하리라는 생각에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온 범 죄자 맥머피는 병원시스템이 환자들의 삶을 더 억압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고압적인 랫치드 수간호사에 의해 컨트롤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들은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맥머피는 듣고 말하지 못하는 추장에게 농구를 가르치고, 차차 병원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시작한다. 집단치료시간에 월드시리즈 야구 시합을 볼 수 있게 일정표를 변경해 달라는 그의 건의는 랫치드 수간호사의 눈치를 보는 환자들 때문에 무효로 돌아가고, 다음 날 다시 한 투표는 과반수를 넘었지만 거절당한다. 맥머피는 환자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자꾸 선동하고, 병원 시스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그의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은 다른 환자들도 점차 병원 측의 억압에 항거해 가지만, 체스워의 담배사건으로 집단치료는 난장판이 되고, 체스워, 맥머피, 추장은 전기충격치료실로 끌려가게 된다. 그곳에서 맥머피는 추장이 말을 할 수 있으면서 속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탈출을 결심한다. 탈출을 계획한 바로 전날, 환자들과의 작별파티에서 깜박 잠이 드는 바람에 발각이 되고, 파티의 주동자 맥머피는 다시 전기충격치료실로 끌려가 식물인간이 되어 돌아온다. 그와 함께 탈출을 꿈꾸던 추장은 영원한 자유를 위해 맥머피를 다른 세상으로 보내고, 병원을 탈출한다.

▶ 안심하고 절망하는 인생, 즐거운 베테루의 집

시사 교양프로그램 'W' 중 156회 방영(2008년) / 상영시간(14분)

내용: 일본 홋카이도 남부 우라카와 지역에 정신장애인 80여명이 모여 사는 <베테루의 집>이었다. <베테루의 집>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며 즐겁게 살아간다. 심지어는 치료해서 없애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 온 정신장애의 양성증상인 환각, 망상을 매년 '환각, 망상대회'를 열고 시상상을 하기도 한다. 정신병이라는 약함을



인정하고, '안심하고 땡땡이 칠 수 있는 회사 만들기'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공동작업장의 다시마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병을 인정하고, 대처능력을 키워가며 다른 정신병 또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베테루의 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III. 지식채널 e 장애관련 영상 리스트

❑ 제 정신으로 정신병원 들어가기(1972년) / 상영시간(5분)

내용 : 쿵 소리가 난다는 거짓말로 정신병에 입원한 까짜 환자 로젠한. 심리학자인 그는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정신병원을 체험하고 모두 정신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기준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영상.

❑ 블랙독 Black Dog / 상영시간(4분 33초)

내용 : 'black dog'의 뜻은 '우울증'. 영국 전 수상 윈스턴 처칠이 평생 안고 살았던 자신의 지독한 우울증을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던 애견 검정개를 '블랙독' (black dog)이라고 부른 데서 나왔다고 한다. 한 나라의 수상이라는 위치에서 자신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해 '블랙독'이라는 애증이 섞인 별칭을 붙였다는 것.

→ 국내 인구의 1% 이상이 겪고 있는 우울증을 재조명한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존재, 이로 인해 완치율이 높은 우울증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산 좋고 물 좋은 곳 / 상영시간(4분 39초)

내용 :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이삿집 트럭 한 대. 산 좋고 물 좋은 그곳, '시설'을 떠나 그들이 도착한 곳.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고 세상 속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시설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 비범한 사람들 / 상영시간(4분 19초)

내용 : 타인과의 소통 없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폐' 자폐증을 가진 이의 10%가 보이는 현상 '서번트 신드롬 (Savant Syndrome)'

→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자폐' 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녀/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과연 자기 안에 갇힌 사람들은 누구인가

❑ 우리들의 노란들판 / 상영시간(5분 32초)

내용 : "어느 날 너무 피곤해 퇴근을 하면 이불 속에서 편하게 쉬리라 마음먹었다. 그래도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교실로 올라갔다."

→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야학인 노들야학,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천막을 쳐서라도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 영순씨 가족의 하루 / 상영시간(6분 5초)

내용 : 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비장애인 오빠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영순씨 가족의 하루.

→ 가족 대부분의 성원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가족을 잘 꾸려가고 있다.

※ 참고자료 : 지식채널e 사이트 <http://home.ebs.co.kr/jisike>



>> 수어가는 페이지

「이영문의 영화읽기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2006년) / 상영시간(114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영화 ‘엄마’의 류미례 감독에게”

영화 '사랑할 때 이야기 하는 것들'은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연출자인 변승욱 감독의 시각에서는 세상에 쉽지 않은 사랑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고, 장애인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저도 포함이 됩니다) 이한위씨가 연기한 심인섭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어머니들이라면 인섭의 어머니(정혜선 분) 입장이었을 것이고요.

죽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은커녕 은행 빚만 5억을 짊어진 혜란(김지수 분)과 정신분열병을 20년 넘게 앓고 있는 형 인섭을 둔 인구(한석규 분)는 각기 짝퉁 디자이너와 허름한 동네의 약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 다하는 사랑과 결혼이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지요.

흔히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과 상처마저 감싸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영 쉽지가 않습니다. 인구와 혜란은 때로는 자연스럽게 만나지만 사랑이 깊어질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고슴도치가 됩니다. 사랑 따위에 빠져들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서로에게 까칠해집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가족 내 고통이 영 달갑지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빛이 싫어 결혼으로 도망가려는 여동생에게 혜란은 도드라진 한 마디를 던집니다. '애 지워, 애 때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동생에게는 더욱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돌아선 그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가 아련하게 다가옵니다.

평소에 착한 동생이지만 인섭의 발병 앞에서는 서글픔과 분노를 견지 않을 수 없는 인구 또한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강이 흐르고 이를 두고 어찌지 못하는 두 사람의 갈등과 희망을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한석규, 김지수 두 배우의 탁월한 연기에 모두들 감동하지만 저는 이한위 라는 배우의 연기도 탄복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모습을 탁월하게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할주로' 테이프와 박카스를 집요하게 찾는 모습이나, 천진난만한 웃음, 돌아가신 엄마를 찾는 대사 등에서 이한위씨의 연기는 '뷰티풀 마인드'의 '리셀 크로우'보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잠깐 류미레 감독이 궁금해 하던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영화 속 내용을 종합해보면 심인섭이라는 인물은 고등학교 때 정신분열병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정신분열병을 앓게 되다보면 학업의 기회를 놓치고 음성 증상에 의해 뇌의 기능이 퇴화되는 모습이 동반됩니다. 정신지체장애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화에서 정신지체인을 비하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영화를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분들과 가족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매우 사실적이고 차분하게 우리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부른 희망과 낙관보다는 앞으로 더 헤쳐나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리산 정상에서 '씨바 좋다'로 압축되는 인섭, 인구 형제의 합성이 산을 타고 해란에게 전해지는 그 장면은 참으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굳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마지막 음악이 나오지 않아도 될 것처럼 저는 느꼈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러브스토리'에 나왔고, 네가 필요하다는 말도 아니고, 막연히 사랑한다는 말 이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정성만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진정성 속에 사랑의 지독한 혼란이 숨겨져 있는 법이지요. 연인도 가족도 장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결국은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어떤 것. 사랑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의식으로는 느낄 수 없는 무의식의 힘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봄날이 그저 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 출처 : 함께걸음 (<http://cowalknews.co.kr>)

부록3 인권용어 해석

인권(Human Rights)

: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천부적권리(自然權)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권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말한다. 모든 사람은 시민으로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인권을 누린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인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갖는 것이라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폐기할 수도, 잃어버릴 수도, 몰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권은 양도불가능한(inalienable) 것이다. (책 도널드 지움, 박정원 옮김, 인권과 국제정치, p.50)

각하(却下), 기각(棄却)

: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 ㉠ 신청 또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 ㉡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의 권고(勸告)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 사단체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제1항~제4항, 제40조, 제44조, 제26조 제6항, 제46조)

긴급구제조치 권고(緊急救濟措置 勸告)

: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인권침해행위



의 증거,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60조)

인권침해(人權侵害)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서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침해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칙 제2조제1항>

직권조사(職權調査)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직권조사통보서를 피해자 및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유발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칙 제38조 제1항·제4항 단서>

진정(陳情)

: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口頭)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식·비공식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진정방법 고지(陳情方法告知) 및 안내(案内))

구금,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 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에 관하여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

<진정사건 처리기한(處理期限):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칙 제4조)

<진정접수: 진정은 문서(우편, 모사전송기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진정의 각하(却下)

- ▲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에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또한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각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관련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제3항, 제4항)

차별(差別)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그리고 폭력(harassment)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서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차별하여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별에 의한 차별>

여성 혹은 남성 등 생물학적인 차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기혼이나 미혼 등 법률적인 혼인여부, 결혼 후 별거, 이혼, 사별, 사실혼 관계(동거), 동성에 커플관계, 미래의 혼인 가능성 등 혼인과 관련된 모든 상태를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한 차별>

임신에서부터 출산 후 회복기간, 자녀 양육과 모유 수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등 임신, 출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태를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

대가족, 핵가족, 한부모가족, 이성애가족, 동성애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구성원, 가족에 대한 돌봄의 책임 등 가족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건을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키, 몸무게, 외모, 체형, 인상, 모반이나 흉터 등의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적인 관계를 원하는 대상이 남성, 여성 또는 두 가지 모두인가를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종교에 의한 차별>

종교가 있거나 없음 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종교의 종류가 다른 것을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

주의, 주장, 진보, 보수, 지지 정당 등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나 의사,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장애에 의한 차별〉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실하여 상당기간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

지금까지 앓은 병의 종류, 그 원인 및 병의 진행 결과와 치료 과정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나이에 의한 차별〉

나이가 많거나 적은 것을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전과자, 귀화인,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평가를 받는 지위를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출신지역에 의한 차별〉

태어난 곳을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

태어나거나 성장한 나라 또는 겨례를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

살갗의 색깔이 다름을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평등(平等)

: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의미.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단, 국가가 사회보장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계층에 대하여 시혜를 베풀고자 할 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재정상의 이유로 불가능할 경우 어떤 계층에게 어떤 조건으로 수혜를 베풀 것인가 국가의 재량이며, 이로 인한 불평등상태를 부득이한 것으로 본다(헌결 1990.6.25. 89헌마107).

현행헌법은 제11조의 일반적인 평등권 규정과 더불어 제31조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32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차별금지를, 제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제(救濟):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인신(人身): 사람의 몸. 개인의 신상이나 신분.

청구(請求):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요구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지식터 인권용어해설 요약]

부록4. 관련법(정신보건법, 인신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 CD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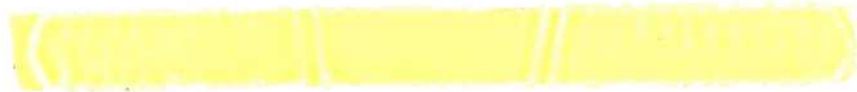
부록5. 세계인권선언, MI원칙 - CD 참조

참고문헌 & 관련사이트

-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 인권연구소 '창' <http://www.khrrc.org>
- ◆ 다산인권센터 <http://rights.or.kr>
- ◆ 인권재단 '사람' <http://hrfund.or.kr>
- ◆ 인권교육센터 '들' <http://www.dlhre.org>
- ◆ 아름다운재단 '공감' <http://www.kpil.org/>
- ◆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http://cafe.daum.net/kg420>
-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http://www.workingvoice.net>
-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http://www.wefirst.or.kr>
-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999. “인권교육 길잡이”
- ◆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1999. “인간답게 살 권리”
- ◆ 한상범 외. 1999. “인권수첩”. 현암사
- ◆ 한국인권재단, 사람생각. 2000.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인권총서9”
- ◆ 유네스코. 2000. “모든 인간은...” 인권교육지침서. 도서출판 사람생각
- ◆ 전국사회교사모임 인권교육분과. 2006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 ◆ 김수원. 2007. “정신보건시설과 인권”. 한국학술정보(주)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공공교육팀. 2008. “정신장애분야 인권교육 교재”



- 발행일 : 2009년 12월
- 저 자 : 2009년 '존중의 즐거움' 경기도 인권TFT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김수영, 백은아, 김준식, 박정림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사랑밭 박종숙
 수원시정신보건센터 김순득, 김영희, 김유라
 성남시정신보건센터 전 선
 안양시정신보건센터 이상은
 오산시정신보건센터 김한영
 여주시정신보건센터 김 호, 임정희
 의왕시정신보건센터 류효영
 평택시정신보건센터 최명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김창용
- 자 문 : 이종국(웅인정신병원 재활부장)
 인권교육센터 '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 삽 화 : 휘리
- 표지 일러스트 : 김두호
- 발행인 : 이영문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장)
- 발행처 :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마음돌봄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9-89(5층)
 031-212-0435~7 / 팩스 031-212-0442 <http://www.mentalhealth.or.kr>



우리는 정신장애인이 알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장애인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존중을 주고받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신장애인 인권의 관점에 대한 자기 점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